영등포구의회
제139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9. 23.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개정이유

- 구민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.

주요내용

-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 신설
  (안 제36조의 2)
  - 장애인, 기초수급자, 전업주부, 60세이상의 노령자, 국가유공자는 면제
  -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, 개장 전까지 수강포기 시에는 전액 반환

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10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,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강료의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수강료 징수기준은 도봉구, 강남구 등 타구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고 또한 저소득 주민, 장애인, 경로우대자 등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으나,
 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료가 5개 구청, 무료가 19개 구청으로 꼭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9. 23.

보 고 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137조 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

제11조 (정보화교육의 실시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1.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
3.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
4.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5.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